

#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3,304,187	9,099,126
일반회계	267,948,629	8,038,459
특별회계	35,355,558	1,060,667
공기업특별회계	9,703,946	291,11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703,946	291,118
기타특별회계	25,651,612	769,548
수질개선 특별회계	15,545,334	466,3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63,985	1,920
주택사업 특별회계	3,390,200	101,706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82,159	26,465
자활기금 특별회계	1,759,400	52,78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756,000	82,68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91,759	23,753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30,978	12,929
기반시설 특별회계	31,797	954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30,24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